

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중 “장학금을 지급받아 수학한 기간의 2배에 상당한”을 “훈련기간과 동일한(국내에서 일과후에만 실시하는 특별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장학생의 의무) ① (생 략)</p> <p>② 충청북도지사는 위탁교육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 <u>장학금을 지급받아 수학한 기간의 2배에 상당한 기간동안 도에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년한을 단축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장학생의 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 <u>훈련 기간과 동일한</u></p> <p><u>(국내에서 일과후에만 실시하는 특별</u></p> <p><u>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의 5할에 해당</u></p> <p><u>하는)</u> -----</p> <p>-----</p>